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엄재창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,
- 광역시·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분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신설(제2조의2)
 -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
-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규정 삭제 (제19조 내지 제31조)

4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, 광역시·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분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- 전통한옥 등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.
- 건축분쟁위원회 업무가 광역시·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